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2. 1 선고 2022가단20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목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경광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13,21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시	구분	공사대금
2013. 10. 4.	최초 공사계약	3,373,730,340원
2014. 6. 13.	1차 공사변경계약	4,277,357,990원
2015. 4. 2.	2차 공사변경계약	4,536,340,600원
2015. 5. 22.	3차 공사변경계약	4,901,487,800원
2015. 8. 6.	준공정산에 따른 최종변경계약	4,659,959,690원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유한회사 F 등 다수의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및 위 하도급 업체들과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4. ‘가압류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500,417,210원(= 원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170,291,99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하자보수예치금 147,674,201원을 공제한 22,617,780원 +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돈 합계 477,799,430원) 중 공탁비용 402,050원을 제외한 500,015,160원을 공탁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년 금제139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라. 유한회사 C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직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52990). 위 소송에서 2016. 7. 13. “피고는 위 회사에게 60,7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각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54977 판결, 대법원 2017. 4. 28.자 2017다204650 심리불속행 판결), 이에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2017. 5. 26. 위 회사에게 77,561,981원을 지급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은 원고에 대하여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 주식회사 D 역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직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52581).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8. 5. 31. “피고는 위 회사에게 114,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6. 15. 위 회사에게 131,642,5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주식회사 E 역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직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52598). 위 소송에서 2018. 7. 25. “피고는 위 회사에게 51,99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8. 23. 위 회사에게 65,465,290원을 지급하였다.

사. 유한회사 F 역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직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51588). 위 소송에서 2018. 8. 8. “피고는 위 회사에게 15,13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8. 23. 위 회사에게 17,631,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8. 19.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47,674,210원을 예치하였고, 이후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위 예치금 중 75,661,000원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사용되지 않은 잔액 72,013,210원(= 147,674,210원 - 75,661,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잔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 업체 중 4곳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합계 292,301,451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 대신 직접 지급하였는바(유한회사 C 77,561,981원, 주식회사 D 131,642,500원, 주식회사 E 65,465,290원, 유한회사 F 17,631,680원),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잔액 반환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

3. 판 단

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26.부터 2018. 8. 23.까지 원고의 하도급 업체 중 4곳에게 확정판결에 따라 합계 292,301,451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 대신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를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구상금 채권의 총액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잔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가 '2022. 12.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한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잔액 반환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 업체 중 위 4곳에게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별도 재산에 의해 지급된 것이므로[을 제6호증(배당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에서 2017. 7. 11. 작성된 배당표에는 원고의 하도급 업체 중 위 4곳이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잔액 반환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의